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검사명령)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1. 지정사유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 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대상식품	대상국가	검사항목	선정 사유
불로초	중국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 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 르, 이미다클로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 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플록 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 트, 프로클로라즈)	통관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 반복 발생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알림 > 공지’에 게재

3. 시행기간 : 2025. 3. 31. ~ 2026. 3. 30. (1년간)

4. 검사방법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 검체의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

5. 시험·검사기관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국내 및 국외 시험검사기관 현황 확인 가능

6. 검사명령서 : 별도 붙임 참조